

2025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변경공고(1차)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2025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

2025. 4. 1.

광주광역시장

1 공고개요

○ **보급기간** : 2. 5.(수)~ 12. 3.(수) 18:00(또는 예산 소진시까지)

※ 단, 보조금 지급신청은 12.11.(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이후 신청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접수장소**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영업점

○ **보급대수** : 1,766대(승용차 1,574, 화물차 177, 승합 15)

구분	전체	일반	우선순위 (10%)	택시 (10%)	택배물량 (20%)	중소기업 물량(10%)
승용	1,574	1,258	158	158	-	-
화물	177	105	18	-	36	18

※ 보급대수는 보급여건·예산범위 내에서 변동 될 수 있으며, 우선순위·택시·택배·중소기업 배정물량은 2025년 6월까지 미 소진 시 일반 물량과 통합하여 추진

- (우선순위)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 (택배물량) 화물을 집화·분류·배송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될 물량
- (중소기업물량)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작사가 생산한 물량

○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지원금액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에서 열람 가능

- ① 구매 및 지원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 차종, 세부 차종, 기준년도 선택 >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 클릭 > 해당 지자체 조회
- ② [별도파일](#) 참고 바라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지원금액 변경 시 추가공고 없이 추진

2 신청대상 및 자격 등

1. 신청대상 :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90일 전부터 연속하여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① 개인: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 [장기렌트·리스\(1년 이상\) 시, 실사용자의 주소 또한 광주광역시여야 함](#)

※ 단, 장애의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는 미성년자의 경우라도 만 18세 이상의 성년자와 공동명의 시 신청 가능
- ②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인 사업자](#)
- ③ 법인·기관 : 광주광역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단체, 비영리법인, 공공기관¹⁾(중앙행정기관 제외)
- ④ 외국인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서 광주광역시에 연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한 자이며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2. 신청자격(필수)

- ①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 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에 동의
- ③ 구매 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 ④ 자동차등록증 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를 '광주광역시'로 등록

1)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함

3. 보조금 지원기준 : 전기자동차를 신규 구매하여 우리시에 신규 등록(동일 차종간)

- ① (승용·승합) 개인(사업자), 법인 : 1대(재지원 제한기간 2년으로 기한 내 추가 구매 미지원)
- ② (화물) 개인(사업자), 법인 : 1대(재지원 제한기간 2년으로 기한 내 추가 구매 미지원)
 - ※ 법인(중소기업 한정) 전기택시는 재지원 제한기간 없음
 - ※ 승용 초소형, 화물 초소형, 법인이 승합 구매 시 재지원 제한기간 없음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중앙행정기관에서 구매하는 경우
- 자동차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 동일 차종(승용, 화물로 구분) 구매하는 경우**
 - * (승용·승합·화물) 2년, '25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건에 대해서도 적용
 - ** (예시1) 전기승용 1대 구매 후 1년 뒤 전기승용을 또 구매 시 최초차량에만 보조금 지원
(예시2) 전기승용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
 -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폐차 환수금 납부시 재지원제한기간 미경과시에도 보조금 지원
-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하고 보조금 수령을 요청하는 경우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등

[재지원제한기한 미적용]

- 1)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23. 2.13.) 시행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 (예시1) 전기화물 1대 구매 후 1년 뒤 기존에 보유했던 경유차 1대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을 재구매하려는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 (예시2) 기존에 보유했던 경유차 1대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2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가능

▶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지원 문의(☎ 032-590-5032)

-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 승용(중·대, 소형), 화물(소·경형) 구매 시에는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는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받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 개인사업자, 법인의 경우 2대 이상 구매시 1대는 지자체(국비, 지방비)에서 지원 받고, 2대째부터는 재지원제한기간 내라도 한국환경공단에서 국비만 지원 가능
 - ※ 승용(중·대형, 소형) 및 화물(소형·경형)의 이용자명의 리스 등과 같이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 개인구매 기준 적용(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조금 회수의무 이행주체를 명확히 지정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3 보조금 지원 금액

1. 구매 보조금

(단위:만원)

구분	승 용			화 물			승합	승합 (어린이 통학차량용)
	중대형	소형	초소형	소형	경형	초소형	중형	중형
계	(최대) 910	(최대) 840	(정액) 320	(최대) 1,360	(최대) 1,020	(정액) 530	(최대) 7,000	(최대) 13,000
국비	580	530	200	1,050	770	380	5,000	10,000
지방비	330	310	120	310	250	150	2,000	3,000

※ 특수용도형 화물차는 기구장치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량 등 환경편익 고려하여 추가 지원

※ 차종별 지원금액은 무공해차 누리집(www.ev.or.kr) 또는 [별도파일](#) 참고

2. 추가 보조금

- ▶ 택배업 유지한 경우를 제외한 추가 보조금은 구매신청서 접수 시 해당자격을 갖춘 신청자(증빙서류 첨부)에 한하여 지원

구 분		추가지원
승 용	공 통	○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 청년(「청년기본법」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생애 최초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전 기 택 시	○ 국비 250만원 추가 ※ 단, 구매자가 택시사업자 면허(면허증 사본 제출)를 가진 경우 가능 ※ 단, 택시법인은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가능
	중·대형, 소형	○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 추가 지원 *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²)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를 폐차하고 전기차 재구매시 20만원 추가 지원('26. 12.31.까지 지원)

2)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상시 또는 간헐)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구 분		추가지원
화 물	공 통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 농업인이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제출 ○ 택배용차량*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추가지원금은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거나, 기존 경유화물차 없이 신규로 전기화물차를 구매하여 택배업을 하는 경우 지급 대상으로,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 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에만 지급 ※ 구매보조금 지급일부터 6개월 이후 택배업 유지여부 확인 후 지급 * 택배용 차량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 분류, 배송하는 형태의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보조금 지급 신청시 까지 폐차 미이행자는 국비 50만원 차감, 폐차 이행자는 국비 50만원 추가 ※ 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로 지원금 수령한 경우 국비 20만원만 추가 ※ 구매 지원 신청 전까지 기존 경유화물차 명의이전시 미보유자로 인정 ※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상기 규정 해당 없으며, 폐차는 '23년 환경부 지침 (23. 2.13.) 이후 폐차한 경우부터 해당함
승용·화물	초 소 형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시 국비 50만원 추가 ※ 증빙서류 예시(별지4호 참고)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확인서 등

※ 구매자 특성에 따른 추가지원금은 중복 지원 가능

단, 정액지원(예: 다자녀가구 지원 등) 금액은 일정 비율(%) 추가지원 금액 산정 후 더함
(계산 예시)

- 차상위 이하 계층, 자녀가 3명인 다자녀가구에서 국비보조금 500만원인 중형전기승용차를 구매 하는 경우 : 500만원 + 500만원 × 20% + 200만원 = 800만원 지급
 - 소상공인이 택배용 차량으로 국비보조금 1,000만원인 소형전기화물차를 구매 하는 경우 : 1,000만원 + 1,000만원 × 30% + 1,000만원 × 10%* = 1,400만원 지급
- *구매보조금 지급일부터 6개월 이후 택배업 유지여부 확인 후 지급

※ **보조금 산출방식**

1. 승용 : [(당초보조금 × (각종 인센티브(청년 생애초조 등) + (제조사 할인비례 추가 보조금 다자녀 추가 보조금 등)]
2. 화물 : [(당초보조금 ± 폐차 이행보조금) × (각종 인센티브(차상위 소상공인 등) + (제조사 할인비례 추가보조금 등)]

4 구매 및 보조금 신청



1. 구매지원 신청서류

- ▶ 제작·수입사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신청)**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통합 안내데스크(1661-0970)

- ▶ 모든 신청서류는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 ▶ 주민등록초본은 6개월 이내 주소 변동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포함

○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별지 제1호)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출고일자 표기)

○ (개인) 주민등록초본

- ※ 공동명의로의 경우 공동명의로자 모두의 초본, 동일세대원 확인을 위한 등본 첨부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세대구성 발생일, 신고일 표기하여 발급

※ 장기렌트·리스 시, 사용자의 계약서 및 주민등록초본 제출

○ (개인사업자)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 ※ 비영리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법인)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외국인) 국내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서류 포함)

<추 가 서 류>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 상이·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확인서
○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체 세목/ 전국 기준으로 발급/ 출생년도~현재까지) * 세목 : 취득세(차량), 등록세(차량) 자동차세(필수) “과세 사실 없음” 확인 ▶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이력 포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본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문의)
○ 전기택시	▶ 여객운송사업(택시) 면허증 * 택시법인 : 여객운송사업(택시) 면허증, 중소기업확인서
○ 농업인	▶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 택배용 차량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지입차량의 경우 위수탁계약서 추가)
○ 경유차 폐차	▶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발급 문의), 말소사실증명서(* 구청 발급 문의) * '23. 2.13. 이후 폐차한 경우에 한함
○ 어린이 통학차량	▶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 관할 경찰서 발급 문의)
○ 지역거점사업 참여자 (초소형전기차)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등

2.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 자격부여

- ▶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 없을 시 자격부여,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안내
- ▶ 지원신청서 등 제출 시 제출서류 식별 불가능 및 서류 미비의 경우 보완요청 없이 승인불가 처리
- ▶ 자격부여가 되더라도 예산집행상황에 따라 대상자 선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대상자 선정 : 차량 출고 · 등록순

-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지원가능 확인요청(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후 광주광역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가능 시 대상자 확정 통보
 - 지원가능확인요청시 출고일 증빙서류(전산자료 캡처본 등) 첨부할 경우 인정
 - 예산 범위 내 잔여물량에 대해 다수 차량이 동시에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확인
요청 시, 보조금 지원대상자 자격부여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 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차량 출고·등록

3. 보조금 지급신청

- 지급신청 :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시스템에 신청
 - ▶ 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사본)(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 사업자등록증(제조판매사 본사), 통장사본(제조판매사 광주지역 총괄부서 단일계좌), 지방세납세(완납)증명서
 - (추가) 택배물량(전기화물) : 화물사업차 운송사업 허가증
- ☞ 광주광역시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5 의무준수 사항

-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
- ②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내 차량 판매 시, 광주광역시의 사전 판매승인을 득하여야 함
 - ※ 타지자체로 전출, 파산, 강제집행,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는 지자체 보조금 미회수
 - <전기승용·승합차>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내 타 지자체 판매 시 운행기간별 회수요율(그 밖의 경우)에 따라 시비 보조금을 회수
 - <전기화물차>
 - ▶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이내에 2만km 미만 운행 후
 - 지역 내 판매 시 보조금(국비+시비)의 30% 회수
 - 타 지역 판매 시 국비 보조금 30%, 운행기간별 회수요율(그 밖의 경우)에 따라 시비 보조금을 회수
 - 지역 내 판매 후 타지역 재판매 시 운행기간별 회수요율(그 밖의 경우)에 따라 시비 보조금 차액 회수

- ▶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2만km 이상 운행 후
 - 지역 내 판매 시 보조금 회수 없음
 - 타 지역 판매 시 운행기간별 회수요율(그 밖의 경우)에 따라 시비 보조금 회수
- ③ 의무운행기간 내 등록말소 시에는 광주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무 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등록을 말소할 경우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을 반납하여야 함
-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 시에는 보험사 등으로 부터 받는 차량보상금이 최초 구매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조치하며, 이 때 환수금은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음.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i)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 기 차 운행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보 조 금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ii) 그 밖의 경우

전 기 차 운행기간	3 개 월 미 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보 조 금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 2022.6.30. 이후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로서 개정된「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시행일(‘24.5.13.) 당시 말소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

6 신청 유의사항

- 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자격부여 취소자로 변경될 수 있으며, 취소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를 재 첨부하여야 함
- ②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거나, 출고 이후 10일 이내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확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 단, 보조금 지급 신청은 12월 11일(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신청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구매지원 대상 차량을 타 차종(차명 포함) 또는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 다만, 부득이한 경우 차량 출고 전 광주광역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 ※ 개인 선호 변경, 제조수입사 출고 지연 등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 안됨
- ④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후에 결격사유(타지자체 진출 등) 발생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함
- ⑤ 위장전입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국비, 시비, 이자) 환수대상임
- ⑥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관계 기관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⑦ 공동명의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가능하며, 공동명의로자 모두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 ⑧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광주시콜센터(☎062-120),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접수처로 문의
 -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 진행상황, 차량계약 등** 관련 사항은 **각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로 문의**
- ⑨ 기타 본 공고문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 및 기준결정은 광주광역시(기후대기정책과)의 유권해석에 따름

[보완요청 안내]

- 구매보조금 진행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및 보조금 지원시스템 상 정보(구매자 정보, 보조금액, 첨부파일 등) 보완 필요시 광주광역시에서 차량 제작·수입사로 보완요청
 - ※ 차량 제작·수입사에서는 보완요청일로부터 보완기한(1차 7일, 2차 7일)이내 보완해야 하며, **기한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신청대상에서 취소 가능**
(미보완으로 인한 신청 취소는 광주광역시에서 책임지지 않음)

【붙임】

1. 2025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추진절차
2. 2025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별지서식】

- (별지 제1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 (별지 제2호)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 (별지 제3호)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 (별지 제4호)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서

붙임 1 2025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추진절차

□ 민간부문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광주광역시(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 공공부문



붙임 2

2025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 국비 지원금액은 보급목표이행보조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변동될 수 있고, 환경부에서 지원대상 차량을 추가할 수 있으므로, 무공해차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필요

- * 구매 및 지원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 차종, 세부 차종, 기준
년도 선택 >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 클릭 > 해당 지자체 조회
- * 지원대상 차량이 추가되는 경우 별도 공고 없이 추진

※ 별도(엑셀)파일 참조

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주소 (등록주소지)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광주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기타 증빙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및 환수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2년 내 타지역으로 판매하거나,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장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8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보조금 반환의무 포함)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2년 내 판매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판매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국비+시비)을 환수요율에 따라 30% 이상을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장 귀하

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

2025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제작사)	제조수입사 (대리점)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구매자	성명 (법인명)		접수번호	
	생년월일 (법인,사업자번호)		연락처	
전기자동차 구매내역	차종	차대번호		차량번호
	차량출고일	차량등록일		보조금액
※ 차종별 보조금 액수는 공고문 참조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2025년 광주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 제출서류 - 세금계산서 1부 -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 보조금 수령 통장, 사업자등록증 사본(본사) 1부 - 지방세납세(완납) 증명서 1부 - 기타 증빙자료 1부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매 도 자	성 명 (법인명)		매 수 자	성 명 (법인명)	
	연 락 처			연 락 처	
	주 소	시 구		주 소	시 구
	이 메 일			이 메 일	
차종/차명	/		차량등록일		보조금 만원
차량번호			차 대 번 호		
사 유	☐ 전출(이사) ☐ 공동명의(보험) ☐ 성능 ☐ 질병 ☐ 경제 ☐ 기타() ※ 차량 판매일 :				
유 의 사 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8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됩니다. ○ <전기승용차>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내 타 지자체 판매 시 시비 보조금 회수율*에 따라 반납 ○ <전기화물차>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이내에 2만km 미만 운행 후 - 지역 내 판매 시 보조금(국비+시비)의 30% 반납 - 타 지자체 판매 시 국비 보조금 30%, 시비 보조금 회수율*에 따라 반납 - 지역 내 판매 후 타지역 재판매 시 시비 보조금 차액 반납 ※ 전기차 최초 등록일부터 2년 내 판매 시에는 반드시 광주광역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보조금 회수율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요율 적용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인계함을 동의합니다. 이에,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매 도 자 : (인) 매 수 자 :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제출서류	① 차량등록증 사본 1부, ② 차량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 사본 1부 ③전기화물차(운행거리 증빙)				

전기화물차 운행거리 증빙자료

판매 차량	차량번호			
	차 명		운행거리	
	전면사진(번호판)		계 기 판 사 진	

본인은 전기화물차 판매승인을 위한 운행거리 증빙자료가 실제 운행거리와 다를 경우 보조금 추가 회수 조치에 대해 이해·동의합니다.

년 월 일

매 도 자 성 명 : (인)

별지 제4호 서식

초소형
전기자동차

[] 승용
[] 화물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000시(군)의 000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000 대표이사

직인